

이주민선교운동본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주민선교운동본부(약칭 '기장이주민운동본부')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두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가장 이주민선교운동본부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교회 목회현장의 변화 속에서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환대와 선교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정책 및 기타 연구·출판사업
2. 이주민 교회(기관)개척과 선교 사업
3.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지원 사업
4.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국내외교류 및 국제연대 사업
5.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교육, 문화, 홍보 사업
6. 이주민선교를 위한 재정모금 사업
7. 이주민사역 전문사역자 양성 및 파송 지원 사업
8.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 설치 및 지원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교회 및 기관(단체)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7조 (조직)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임원회, 사무국,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를 상설하고, 특별위원회와 정책실, 전문위원(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할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조직은 총회 선교위원회에서 한다. 단 교단 총무 및 선교위원회 위원장과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운영위원회는 총 수 10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원회의 요구로 열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 2) 결산 및 감사 보고
 - 3)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원회 선임
 -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특별위원회와 정책실의 구성

- 6) 회원의 허입과 징계 및 복권
- 7) 고문,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대
- 8) 감사 선임
- 9) 각 노회 이주민선교 관련부서 설치 및 지원
- 10) 기타 주요 업무

제9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과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이며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공동대표는 7인으로 하고 총회 총무와 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과 기장이주민선교 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공동대표가 되고, 4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여성 1인을 포함한다.
2. 상임대표를 공동대표 7인 중 1인을 선출하며, 상임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전문직능을 고려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 2) 활동내용 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 3) 회원 확대를 위한 활동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공동대표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기장 총회 사무실 안에 두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1. 사무국장은 기장이주민선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단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본 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예산지원금, 기타 국내외 후원금으로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및 준용(사항)

제15조 (개정)

본 회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총회 선교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총회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 규칙과 관례에 따른다.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